

공유재산(카페)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수원시 광고호수공원 원천호수 나루터시설 내 카페(118.31㎡, 참고포함)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총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첫해는 광고호수공원 나루터카페 운영에 따른 입찰 낙찰 금액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원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 시가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수원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인테리어 및 운영 기기 등은 설치 전 수원시와 사전 협의하여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카페 운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카페 외부에 운영을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사용 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6. 기타 국유재산관계 법령 또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사용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동 수익 허가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및 일체의 사항은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1.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상호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수원시 공원녹지사

업소의 결정에 따른다.

2. 계약당사자는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카페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고, 카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 원상 복구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 인해 카페 운영에 영향을 끼치더라도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